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

자 료 집

-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16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 부평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및 프로그램실
- 주최 :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주관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

-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12월 16일(월) 오후 2시~5시 총 12시간
장 소 부평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및 프로그램실
신청기간 2019년 11월 20일(수) 18시까지
신청방법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idph@hanmail.net로 전송
대 상 민주시민교육 활동가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강좌 및 강사양성과정을 수강한 분
이수요건 전체 수강의 90% 참여(수료증 발급)
문 의 032-862-5353/010-2045-5159(정윤미)



일시	내 용	강사	장소
11/25(월)	인천 인권의 현주소, 정책과 내용 -인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 찾기	윤대기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부평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12/2(월)	민주시민교육, 오늘을 돌아보다	권복희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대표)	프로그램실2
12/9(월)	민주시민교육으로 사회를 기획하다	이필구 (안산YMCA사무총장)	다목적홀
12/16(월)	다시, 민주시민교육	최위환 (민주주의기술학교/녹색연합 활동가)	다목적홀

※일정과 장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관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후원 :  인천광역시

제 1강

윤대기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천 인권의 현주소, 정책과 대응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윤대기

010 4446 4566 ydaeki@naver.com

변호사 윤대기

- 인천광역시인권위원장
- 민변인천지부장/전)인천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장
- 법무법인로웰/인천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
- 인천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 해양경찰청국민소통위원/인천시경찰청개혁자문위원
- 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 가톨릭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

인권기본조례 제정 경위

서울, 경기 등 16 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2012년경 국가인권위의 인권기본조례 제정 권고 이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등을 구성해서 활동해왔습니다.

인천시에서도 2013년부터 인권기본조례 제정 운동이 있었지만, 개신교단체 등의 반대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마침내 인천에서도 2019년 12월 7일 인천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 1월 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 및 기본권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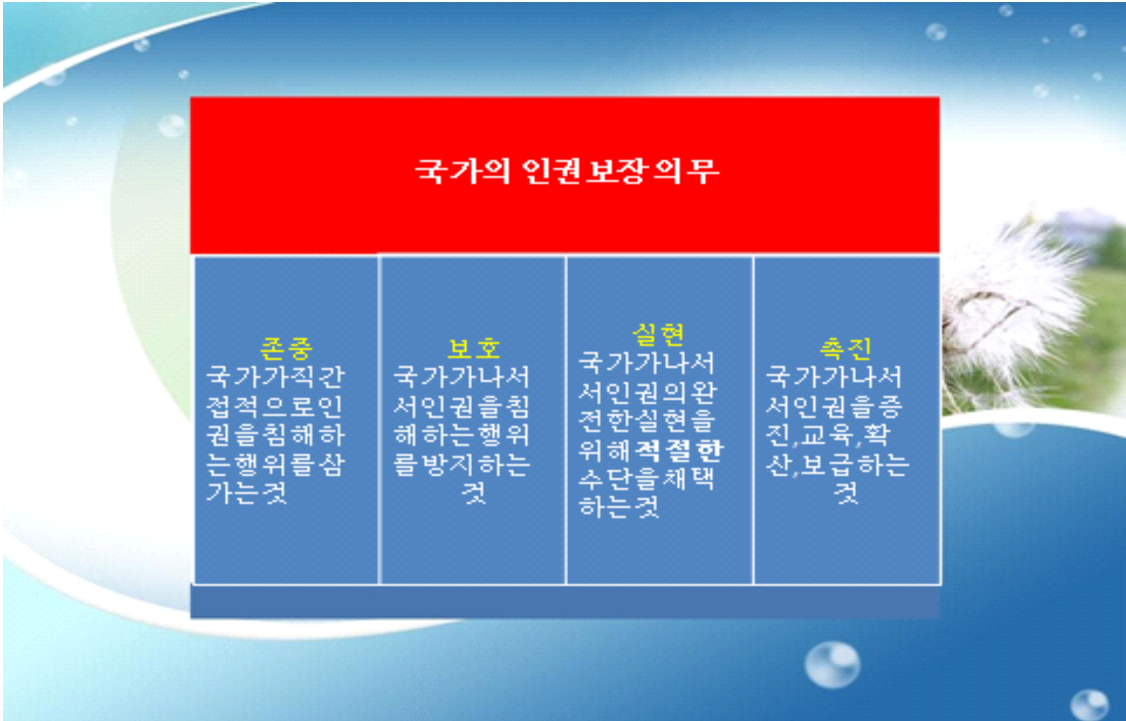
(헌법 제 10 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 (헌법 제 11 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37 조)



인권도시와 그 필요성

가. 인권도시

인권이라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원칙과 도시라는 삶의 터전을 하나로 결합하는 개념

인권 (Human Rights) + 도시 (City)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주제였던 인권을 → 도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누구나 도시 생활의 자유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인권도시 특성

- ◆ 도시구성 주체들이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드너십 정신으로 모른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도시이며,
- ◆ 주민과 거주민,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수인 모른소수자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차별금지 원칙, 법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 ◆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자체는 교육, 주거, 보건, 환경 및 치안 등의 분야에서 행정을 펼치므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선에 있으므로, 지자체 없이 인권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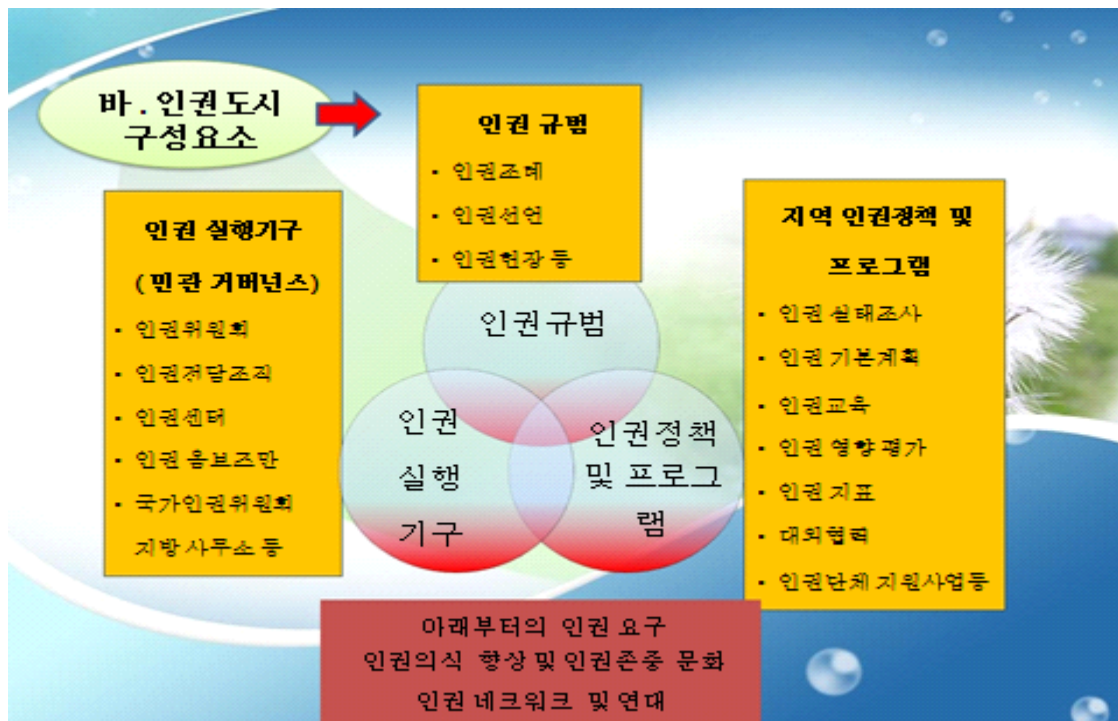
그러므로 지자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권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때 행정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민원제기, 인권위 진정 나아가 행정 소송 등으로 귀결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인권체제를 어떻게 보장하고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 광주인권도시 선언문

- ❖ 인권도시란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 정치적 과정으로 정의
- ❖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민사회,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



인천시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그 시행

가. 인권기본조례 제정 경위

서울, 경기 등 16 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2012 년경 국가인권위의 인권기본조례 제정 권고 이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등을 구성해서 활동해왔습니다.

인천시에서도 2013 년부터 인권기본조례 제정 운동이 있었지만, 개신교단체 등의 반대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마침내 인천에서도 2018 년 12 월 7 일 인천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2019 년 1 월 7 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입니다.

나.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제정 / 공포 / 시행

인천시민의 열망이 담긴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하 ‘인권기본조례’라 한다) 가 2018 년 제정되어, 2019 년 1 월 7 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목적

인천시 인권기본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정의

인권기본조례는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시민”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시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등의무

인권기본조례 의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5) 인권기본계획 수립등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인권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이주민·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도시 추진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천시장은 인권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6) 인권교육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

7) 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 년 주기로 인천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합니다.

8) 인권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업무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그리고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인권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인권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인권센터 운영, 인권정책 등의 의견제시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며,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업무로 합니다.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2019년 4월 29일 위촉

인권위원 : 15인, 호선을 통해 위원장(윤대기)과 부위원장(박명숙) 선출
분기에 한번 정기회의 (임시회의 개최 가능)

2019년 4월 29일 및 9월 정기회의

2019년 6월 18일 임시회의 / 수시로 점심모임 등 개최

토론회 : 7월 3일 제 1회 토론회 개최 / 12월 제 2회 토론회 예정

제 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지지 성명서 발표 (2019년 8월)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협의회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역지자체 지원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자대회 참석 (2019년 8월)

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 참석 (2019년 9월)

인천시장 간담회 (2019년 10월 29일)

2019년 11월 19일 인권옹호자컨퍼런스 개최

4> 광역시·도 인명 전달부서 구성 현황 (2019. 8월 현재, 전북도 인명담당부서 제공)



- 10 -

2) 보호관 회의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상임 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전원으로 구성된 보호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하고,

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간사는 상임 보호관으로 하며,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비상임 보호관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

인권침해 등의 결정은 회의의 재적보호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조사 개시

보호관은 대상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신청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조혜 인천시인권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해당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상임보호관은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대상기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입니다.

5) 신청방법

인권침해 등을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처리기간

신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의결 및 권고 사항의 통지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권고사항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관련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8) 대상 기관의 조치의무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이의신청

인권부서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뤄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 16 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상임 보호관이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인권부서의 장은 회의의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인권도시로서의 인천을 위한 제언

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기본적 제언

- ❖ 인권은 침해 이전에 예방과 증진을 우선시
- ❖ 인권 침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과 구제
- ❖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및 향상
- ❖ 인권 감수성 향상
- ❖ 인권 의식의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인권!
- ❖ 인권에 기반한 행정 및 정책
- ❖ 인권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인권과 민주주의는 역사의 궤를 같이함)

나. 인천시에 대한 제언: 인권에 기반한 행정 및 정책

- ❖ 인권기본조례 시행
- ❖ 인권위원회 사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 ❖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인권친화적인 해결방안 모색
- ❖ 인권행정: 인적 재정적 적극지원 / 복지행정과도 유기적인 조화 필요
- ❖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필요성 공감
- ❖ 인권실태조사
- ❖ 인권기본계획 (5년단위 종합계획): 현재 수립중이며 조만간 중간보고회 예정
- ❖ 인권영향평가: 정책 수립 및 조례등 제정시
- ❖ 인권지표 개발 및 이에 대한 평가
- ❖ 인권도시 선언 / 인권현장발표
- ❖ 기초지자체와 인권협의체등 구성하여 소통과 조정, 그리고 협력
- ❖ 전국 광역지자체인권협의회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현재 충남 (차기 전북)
-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유치 (최근 제주유치)
- ❖ 인천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다. 시민사회에 대한 제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연대

- ❖ 인권 이슈와 사안을 공유
- ❖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 및 공동해결을 위한 노력
- ❖ 인권 침해 예방 등에 대한 대책 제안
- ❖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행정 및 인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및 요청
- ❖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및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 상시적인 인권 관련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 인권 이슈 및 사안에 대한 연대와 협력

라. 기초지자체에 대한제언: 인권에 기반한 행정 및 정책

- ❖ 인권기본조례제정과시행 (미추홀구, 서구)
- ❖ 인권위원회 (미추홀구)
- ❖ 인권보호관 제도운영?? (인천시와조정 및 협력 필요)
- ❖ 인권행정: 인적 재정적 지원 / 복지행정과도 유기적인 조화 필요
- ❖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미추홀구)
-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교육 실시 (인천시와조정 및 협력 필요)
- ❖ 인권실태조사
- ❖ 인권기본계획
- ❖ 인권영향평가: 정책 수립 및 조례등 제정시
- ❖ 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
- ❖ 인권 선언 및 인권헌장 발표
- ❖ 지자체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 ❖ 인천시와 기초지자체간 인권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복을 줄여, 효율적인 인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안

마. 참여자 및 시민들에 대한제언

- ❖ 인권감수성 향상 + 공감능력 향상
- ❖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노력
- ❖ 인권행정 담당자 및 인권보호자를 넘어 **‘인권 옹호자’** 로서 함께!!
보호와 옹호의 차이 : 擁護(옹호) = 안을 옹 + 보호할 호
옹호? 공감하고 함께 하며 같은 편으로서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것
영어로 옹호는 protection(보호) + support(지원) + advocate(지지)
❖ 인권옹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소수자만이 아닌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
와 미래세대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

인권기본계획 (5 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업체 선정 : 연구용역업체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연구용역비 예상가보다 저가 입찰되어 실제로 연구용역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착수보고 : 2019 년 7 월 12 일 실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작업 중

(2019 년 10 월 22 일 현재 아직도 실태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중간보고는 2019 년 12 월 예정이며, 공청회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최종보고회 209 년 12 월 예정

인권기본계획이 연내 수립될 수 있을지 및 수립되는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인권팀의 위상제고 필요

2019 년 8 월 조직개편으로

당연직 위원 : 소통협력관 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으로 변경

간사 : 혁신담당관 에서 노동인권과장 으로 변경

인권팀 : 팀장 1, 주무관 2

인권팀이 소통협력관 - 혁신담당관 담당에서 일자리경제본부 - 노동인권과 담당으로 변경

인권위원회의 위원 15 인 중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음.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음.

노동인권과가 신설되면서 노동인권과에 노동관련 팀이 2 개, 그리고 인권팀이 편입되었고,

인권노동과도 아닌 노동인권과의 한 팀이 되면서, 인권팀의 위상이 축소되었다는 평가 있음

인천서구 인권기본조례에는 인권위 당역직에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5 인) 포함시켜 놓았음(인권기반 행정을 위한 이상적 조례 ?)

❖ 인권센터 설립 필요성

현재 인권팀 3인으로는 인천시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 등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상태이므로, 인권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센터의 조속한 설립 운영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이후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나, 인권센터 설립은 최대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 인권교육

인천시 일부 공무원 대상으로만 실시중이나 인권기본조례에는 전 공무원 대상으로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필요합니다.

❖ 인권단체 네트워크 연대와 협력 필요

시민들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인권보호관 제도

8인의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회의(2명 상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신청건수 적으며, 대부분 요건 부적합으로 각하되고 있습니다.

❖ 예산 부족 등

인권위원회 회의 후 식사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조차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지자체장의 의지

인권기본조례의 취지 및 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위해서는 제도 및 시스템 정비 그리고 인천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결론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취지가 살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인권부서에 대한 체계 및 위상에 대한 재정립을 하여야 하며, 인권팀외에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인적/재정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과 인천시민들의 인권도시 비전 및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토론회

2019년 7월 3일(수) 14:00
동 문화창작지대 1층 다목적홀

인천광역시시는 인권정책 수립의 사회적 합의과정 일환으로 인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각계 인권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민이 실감하는 인권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인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접수	13:30~14:00
발제 및 토론	14:00~15:50

● **좌 장** |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윤대기

● **발제자** | 인권정책연구소장 김형환
-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 **토론자**

-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대학교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 인천광역시 교육청

-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성배 의원

송다영 교수

장영구 생태환경분과위원장

정희남 관장

유경환 인권보호관

박경서 센터장

질의응답	15:50~16:20
-------------	--------------------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알아건져사항을 사전 취합하고 있습니다(6월28일까지 아래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면 토론회 진행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간 화 : 032-440-1657

이메일 : enosin2@korea.kr

! 오시는길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

자세한 지도는 홈페이지 (<https://www.incl.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2019년 인천인권옹호자 컨퍼런스

인권, 사람과 사람을 잇다

|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10:00 ~ 17:30

| 장 소 송도 센트럴호텔

| 주요 내용 인권도시를 위한 행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 주최·주관 국가인권위원회, 인천광역시인권위원회, 미추홀구인권위원회, 인천자유경제진흥위원회, 인천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내 용
10:00~11:00	개회 / 인사말, 참가자 소개
11:00~12:00	거즈, 김연 / 세계인권선언과 인천 문대기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5:20	제1세션 (인권도시인사회) (발표) "지역사회의 인권" 이승우 인천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희연 청소년인권옹호자센터 대표, 사무국장, 박정현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정수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정신대인권위원회 유족회 조직위원장 김명원 위원장 발표후론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5가지 발제, "인권과 행정 : 인권교육을 기반으로" 권혁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발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약서 인권개념서 구축" 서유리 광명시민운동센터 인권교육 담당자 발제, "지역사회단체의 인권업무 추진" 이성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센터장 발표후론 인권행동을 위한 5가지 조건
15:20~16:00	전체모임 (세션별 논의 내용 공유)
16:00~17:30	제2세션 (인권과 행정) [과연] 인천 인권 개편을 위한 세션 인천가주, 지자체, NGO의 역할과 협력/ 김형환 인천정책연구소장 발표 후론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광장 사용 관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권고 핵심내용 설명

서울시가 제20회 서울라이프라이프를 위한 서울라이프라이프위원회(이하 '서울라이프위원회')를 통해 서울광장 사용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 처리를 지휘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서 향후 그와 같은 정책과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서울의 각 공간을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는 제반의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각 주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의 이유

□ 비영리민간단체인 서울라이프라이프위원회는 2019. 6. 1. 제20회 서울라이프라이프를 개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19. 2. 26.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인고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그 사용인고를 즉시 수리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그 수리비용을 서울특별시 예산상장설치(이하 '예산상장설치')와 결하여 처리하였음이나, 이로 인하여 서울광장의 사용인고에 대한 승려는 각 3개월 동안 거제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행사가 그 발로가 불확실함으로 인한 업무지체와 불연속 등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를 관여하였습니다.

- 서울광장조례는 "시민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와 연명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제1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로서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그 사용인고를 하고(제5조) 이 인고가 서울시에 의하여 수리됨(제6조)으로써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시민들의 서울광장 사용인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제6조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그 인고의 내용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나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의 중복될 경우"라는 시민화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인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단서)
- 서울라이프라이프위원회는 그동안 주최한 20회째 서울라이프라이프 상 2015년에 개최된 제16회 서울라이프라이프 이후 5년간 계속하여 서울광장에서 그 행사를 광복을 계기로 광복회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라이프라이프위원회는 매년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광장 사용인고를 파견하고 서울시는 그 때마다 서울광장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용인고를 수리받아야 하며 그와 의견을 거쳐 수리해 줍니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일부 시민들이 라이프라이프에 반대하여 행사를 주관에서 탈퇴함을 제정하여서 광복회의 준으로 인한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그 수리비용을 보다 선량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그 행사가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사용인고는 즉시 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비합리적인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조처라 할 것입니다. 첫째, 문화행사를 비롯한 집회와 사용은 광복회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관념 및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의 규정, 그리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서울광장사용조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조치는 대량집회와 그에 반대하는 대량집회와 대량집회 및 자의 권의 충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정서유지책임을 지는 공공기관은 집회 그

자제를 남기지거나 시민 혹은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집회상호나 시민, 집회행위 등을 조정하거나 불합리한 객적 등을 함으로써 충돌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 하며, 따라서 서울광장조례 제6조제1항 조처에 예외적 규정은 가장 좁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이와 같은 헌법상헌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시민화원회에 그 결정을 맡김으로써 집회의 주체 측에 부당한 차별과 업무지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 성소수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행사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종교적 편견에 기반한 일부 시민들의 반대집회가 예상된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서부터 차별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를 비롯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이를 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및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사용인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하고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한 서울광장사용조례 등을 감안할 때 반대집회가 예상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이 주체가 된 행사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같은 제16회 서울라이프라이프에대하여 작년의 제19회 서울라이프라이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서울광장사용인고는 시민화원회의 파견하여 그 의견을 거쳐 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체를 통해 다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의 제19회에 열린 서울라이프라이프가 광복회로 진행되었으므로,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지난 해 광복회 행사 또한 서울광장사용조례 제6조제1항 조처의 사용 목적 설명이나 정책에 대한 반대론 위배나 차별적 조치의 발생 사례가 있어 매우 상급적으로 운영되어 불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난 4년간의 서울광장사용 사례에 비추어볼 때 조처가 수리되

었던 부적응들에 대한 우려가 존재 근거 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그 이후의 서울광장사용인고의 수리과정은 서울광장사용조례 제6조제1항 본문의 원칙에 따라 즉시 수리하는 것이 헌법상헌정적 원칙에 부합하는 사항이라고도 말할 업무처리 및 자의 권이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의 혐오·차별의 편견들은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발생한 성소수자집단의 편견을 부정하고 그들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하는, 반인권적·반민주적 행태임을 확인하면서, 공적 기관이 그 직무관련 행위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차별의 행태들을 방치·묵인하거나 암묵적으로 조장·지지하는 경우 또한 이런 혐오·차별에 대응할을 지책하고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사회질서의 보호를 위한 사전 대응의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나아가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성소수자에 반대하여서 질서를 교란하는 대량집회와 아니라 정서 보호되어야 할 성소수자들의 집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서유지책임을 지는 차별적 성격의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서울시가 관할하는 운영, 관리하는 제반의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 시설 담당부서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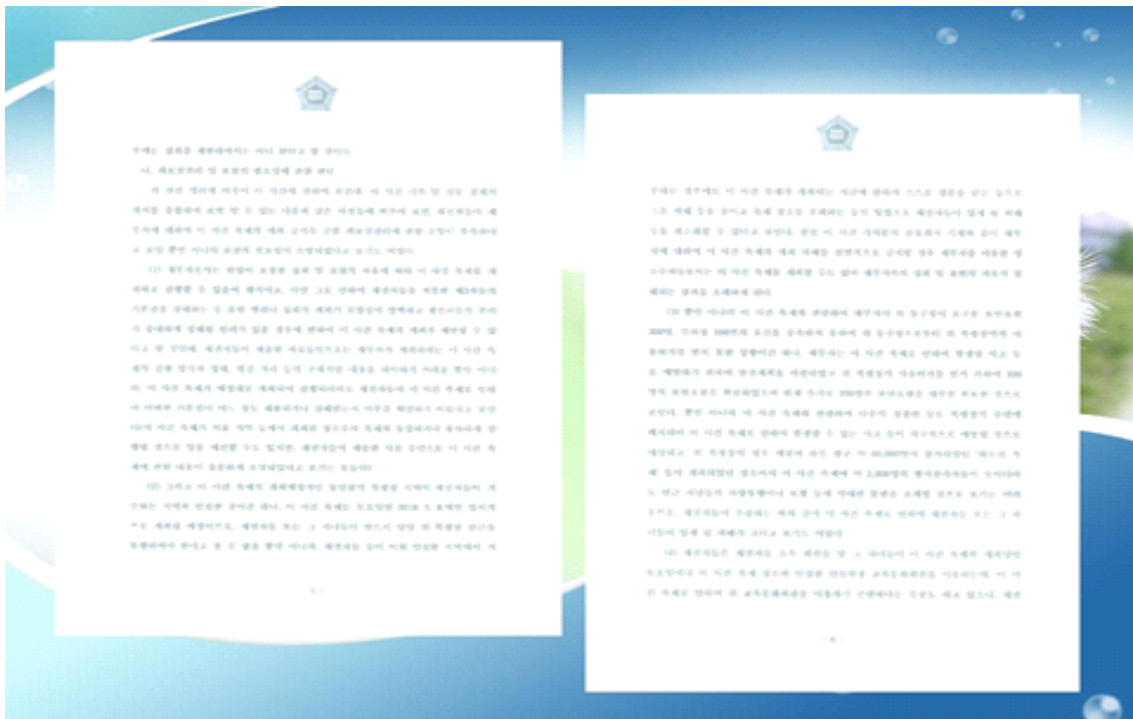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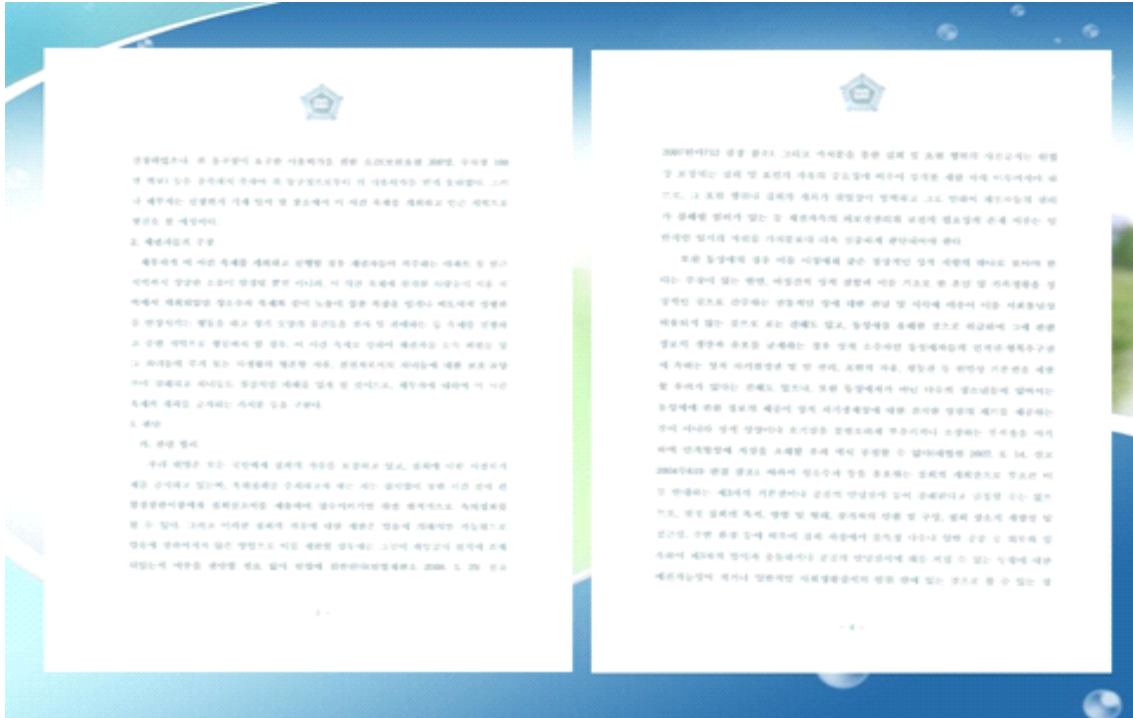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상기 검토내용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청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A large crowd of people is gathered outdoors, participating in a protest or demonstration. Many individuals are holding up various flags, including the South Korean national flag (Taegeukgi) and other national flags. Some people are holding up signs or banners, though the text on them is not clearly legible. The crowd is dense, filling the foreground and middle ground. In the background, a building with a green wall is visible. The overall atmosphere appears to be one of a significant public gathering.

[illegible]

14. 정부에서는 2008년 8월 21일 제 1차 전국 재난대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연재난대책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연재난대책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연재난을



A graphic with a solid orange background. In the center is a white, horizontally-oriented shape with a decorative, scalloped border. Inside this white shape, the text "Q&A" is written in a large, bold, black sans-serif font. The text has a subtle drop shadow effect, making it appear to float slightly above the white background.

Q&A

인천민주시민교육 심화과정

민주시민교육,
오늘을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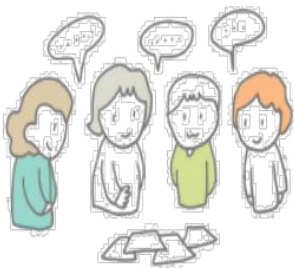
권 복 희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오늘 과정은요..

민주시민교육, 지금보기

민주시민교육, 다시 보기

민주시민교육을 도구로 한
변화를 상상하는 사회기획자!



이미지출처: 동네한바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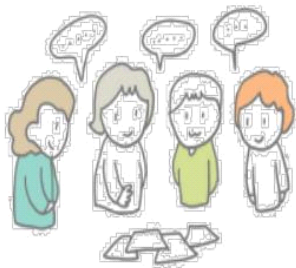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는?

나의 변화
사회 변화

민주시민교육 기획자
질문하다.

왜, 무엇을, 어떻게..

민주시민교육, 지금은..



이미지출처: 동네한바퀴 자료

내가 기획한(또는 경험한) 민주시민교육!

어떤 변화를 상상했던가?

어떤 내용과 방법이었나?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강점과 약점

내가 기획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어떤 변화를 상상했나?

공동키워드

활력

연대

좋은
환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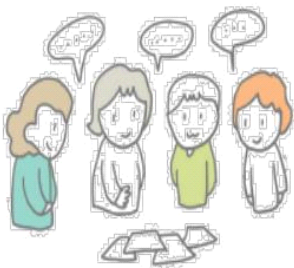
--

어떤 내용과 방법

강점

약점

회고



이미지출처: 동네한바퀴 자료

제 3강

민주시민교육으로 지역사회를 재구성하자

-시민사회토대구축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

1. 생각 열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선주가 규정된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과 물량을 싣고 배를 출항시켰으며, 감독 당국은 그것을 적발하지 않았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배에서 빠져나갔다. 해경은 구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정치권과 대통령은 무책임으로 일관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말처럼 물 밑에 잠겨 있는 이면은 세월호 참사 직후 You Tube를 통해 절규하는 한 학생의 외침에서 드러났다. “모든 사람이 침통해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소위 SKY를 많이 간다. 이렇게 공부해서 외교관, 기자가 되면 뭐하겠느냐. 어른 되기가 무섭다...” 구조될 수도 있던 아이들 수백 명이 찬 바다에 빠져 죽어 가는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구조에 제대로 책임 지지 않거나, 계속 거짓보도를 한, 바로 그런 정부 고관, 정치가, 기업경영자, 기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이런 일 신경 쓰지말고 중간고사나 잘 보아서 경쟁에 승리하라는 학교교육과 사회가치가 무섭게 자리 잡고 있다.

“가만있어라”는 말은 현재 한국사회 자화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이다. 그렇다면 가만있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민주시민교육의 철학이자 원칙인 민주주의를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풀어보면 평화, 인권, 민주주의, 양성평등, 지속가능성 등 행복한 삶,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유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공유가치에 관한 지식을 넘어 그것을 내면화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이가 시민이라 말할 수 있다. 결국 한국사회 내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 이후 절제되지 않은 이해관계의 분출, 사회갈등, 공공영역에 대한 사적,경제적 논리의 잠식 등 기존의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배우고 체화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교육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은 성인교육의 6가지 영역 중 하나로 “시민참여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관해 학습하고 훈련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은 직업교육, 취미교육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어 민주시민교육은 그 중요성과 필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향후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의 함양, 그리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불요불급한 과제이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시민사회 등이 함께 나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원리 생각해보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현재까지 논의된 시민교육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발전·심화시킬 수 있는 시민적 ‘가치’와 ‘덕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보그스(Boggs, 1991)는 특별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 ‘성인 시민교육(adult civic education)’이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성인들에게 더 넓은 세계의 시민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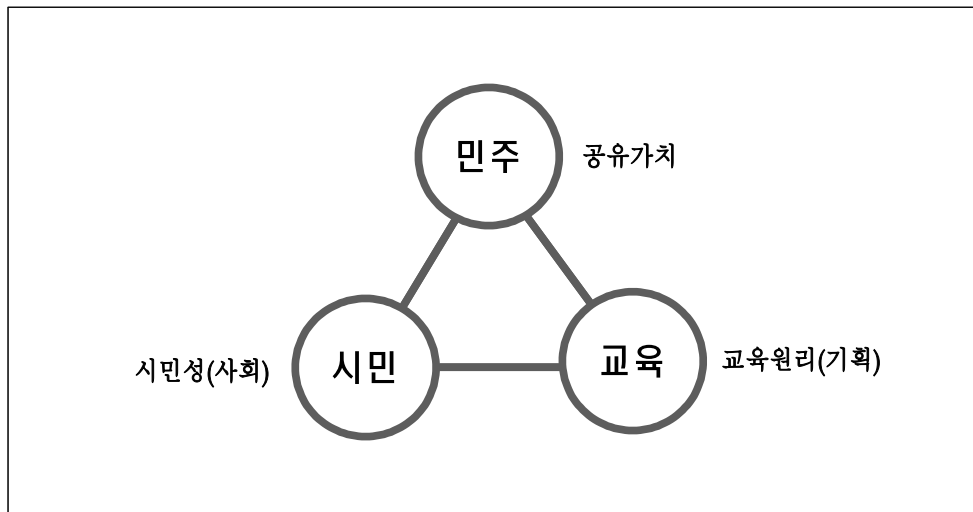
사실 이것은 시민교육을 정의한다기보다 시민교육의 효과를 나열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 맞는 시민은 누구인가? 라는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포괄적인 합의조차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시민성을 키운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어떤 시민 성인가?’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어떤 활동,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성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편으론 실천 중심의 활동만을 고민해선 안된다. 지금 시대에 맞는 인간상, 시민상에 대한 해석과 실천프로그램이 함께 연구되고 지역현장에 맞는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협소하게 보지 않고,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보면, 시민교육은 단순히 민주주의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배우는 시민학습의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서울대 한승희 교수는 “시민운동이 풍선의 겹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시민교육은 그 안을 채우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외적 경계를 확장하는 과정이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현장지침서”, 2010. 28-29쪽

었다면, 시민교육은 그 존재를 정교화하고, 역사적 기억을 안정화 시키는 한편, 그 실체를 새로운 문화적 색깔로 칠하는 과정이다. 획득된 시민사회의 광장에 시민의 생각과 삶을 채워가는 과정이다.”²⁾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세가지 단어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띄고 있다. 민주와 시민과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 기획자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이 세가지 단어를 하나씩 풀어서 아래와 같이 개념을 세우고자 한다.

<표 1. 민주시민교육 가치 모형>



① 민주(공유가치·공공성)

원론적으로 민주라는 단어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적인 배경까진 거론치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민주공화의 지향 가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지속가능성 등 행복한 삶,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유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 제도의 형식 보다는 어떤 내용,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 즉, 원론적인 가치의 수준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공유해야 하는 공유가치라는 점이다.

공유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공공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경제 성장 지상주의 질서에서 주체적 시민들의 연대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주체성 회복,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공공복리적 가치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공공성의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헌법학자 루돌프 스멘트는 공공성에 대체로 다섯가지의 의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

2) 한승희, “시민교육심포지움, “한국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 2013

았다. 첫째 공공성은 공공연합, 일반적 이익의 영역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성은 공개적 토론, 공개절차에서 진리 결백 및 정의가 획득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셋째 공공성은 단지 수단이 아닌 자체 목적으로서 고양된 의미를 내포한다. 넷째, 공공성은 집단적 생활영역의 주체, 즉 인민을 의미한다. 다섯째 공공성은 현대 국가의 가장 고유한 과제의 본질을 의미한다.³⁾ 이를 보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공공성을 규정짓는 주요 요소는 인민(populus), 공공복리(salus publica), 공개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 시민(시민성 / 시민사회)

1960년대 이후 약 반세기 동안 한국은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제도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었다. 반세기 동안 숨 가쁘게 이뤄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 성장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고 맹위를 떨치는 동안 국민들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며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 받고 있다.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했지만 사회적 갈등과 커져가는 빈부격차를 통해 내면의 분노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성장이라는 물신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숙하려는 개인의 합인 성숙한 사회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성숙한 사회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프레이리는 인간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인간화는 모든 일의 목적이다. 반대로 비인간화는 진정한 인간본성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적절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자유는 인간을 완성 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인간화는 주로 개인의 목표라기보다는 사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⁴⁾ 결국 시민성(시민적 감성)은 개인이 인간답게 살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성숙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구어 질 수 있다.

현재 우리 안에 일깨워야 하는 것은 협동(상호협력)⁵⁾의 시민성이 이다. 개인은 사회에

3)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21쪽

4) 존 엘리엇, “해방의 교육자 프레이리와 교육” 살림터, 2004. 92쪽

5) 협동의 의미는 단순히 협력한다거나 도덕적으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닌 로버트 데이비드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이 말한 결합(Bonding)과 연결(Bridging), 즉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결합 사회적 자본은 또래, 같은 인종, 같은 종교와 같은 사회화 과정에 동일한 특성들 사이에 생겨나는 사회적 자본을 말한다. 다인종 사회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자본, 즉 연결사회적 자본이 필요하고 그는 주장한다. 연결 사회적 자본은 다른 축구 팀의 팬클럽과 같은 이질적인 집단

서 분리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서로 공감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즉 인간에게는 타인이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 분노 등 감정에 공감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양심)의 인정을 받도록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무한 질주를 적절히 제어하여, 외부 강제가 없이도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사람의 성장과정을 보면 유아기에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던 이타성이 사회화를 거치면서 점점 상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성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 하기 시작한다. 이타성이 협력이라는 형태로 일반화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인 언어는 협력으로부터 얻어진 산물이다. 특정과제를 위해 여러 개체가 집단으로 일을 할 때에 언어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언어는 협동과 함께 진화했고,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 발전했다. 상호협력의 진화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출발점이다.⁶⁾

③ 교육 (학습자와 교수자는 분리되지 않는다. 사회기획)

일반적으로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교육은 때로는 이데올로기이며, 한편으론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민교육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런 개념정리로는 현재의 시민교육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사실 교육(教育)이라는 어원부터가 목적의식적이다. 教育이란 한자어를 풀이하면 教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育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듯 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권위적이다. 학습이 학습자의 가치와 선택을 중시한다면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계획과 통제가 중심이 된다. 학습이 가르침과 배움이 대화로 통합된다면, 교육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별개의 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교육의 쓰임새는 학습과 통합되어야만 온전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⁷⁾

결국, 시민교육은 교육과 실천이 분리된 교육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육과 실천을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스웨덴의 학습공동체운동(스터디 서클)을 국내에 소개한 한송희 교수는 시민은 ‘시민의 사회’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이 된다. 시민은 개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집합성

사이에 생기는 사회적 자본을 말한다. 퍼트남에 의하면 두 사회적 자본은 상보적으로 강화한다고 주장한다.(위키백과 로 퍼트남, 퍼트넘,

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B2%84%ED%8A%B8_%ED%8D%BC%ED%8A%B8%EB%82%A8)

6) KBS사회적자본 제작팀, “사회적 자본” 문예춘추사, 2011. 263-264쪽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활동길잡이, 우리 시민교육해볼래요?”, 2010. 22-23쪽

의 존재적 특성을 칭하는 말이다. 뿔뿔이 흩어진 시민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다. 내 방안에 홀로 앉아 있는 나는 더 이상 시민일 필요가 없다. 시민은 시민사회라는 관계적 맥락위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맥락을 읽어내는 일에서 시작하고 그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읽어내는 문해력으로 보고 있다.⁸⁾

황주석은 생활가치를 세우는 것이라 설명한다. 생활가치를 생명가치, 지속가능한 삶 즉 일용할 양식의 가치로 보고, 생활가치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 없고, 인정, 신뢰, 격려, 희생, 사랑의 영성이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생활가치는 영(靈)과 육(肉)에 모두 관계된 것⁹⁾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은 시민 스스로 권리를 자각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교육이다.

시민교육은 ‘주장하는 교육에서 스며드는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의 시민교육은 과거 민중교육과는 다른 점이 있다. 과거 민중교육에서 교육은 ‘의식화와 조직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론의 핵심은 본래 지식의 생산과 분배가 직접 소비자로서의 민중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민중의 생활세계 속에 뿌리내려 그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내고, 다시 역으로 그들의 삶을 변혁으로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레이리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민중교육은 엘리트 중심적 활동에 머물면서, 대중을 대상화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결국, 밑으로 부터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의 길러지지 않고, 가르쳐서 변화시키는데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¹⁰⁾

이런 민중교육의 맥락을 이어받은 민주시민교육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역시, 이러한 과잉 목적 의식성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프레이리는 의식화를 사물의 원인을 파악하는 비판적 반성으로 보았다.¹¹⁾ [비판적 의식을 위한 교육]에 담겨있는 ‘지도인가 소통인가’는 프레이리의 교육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식 이론을 다루고 있다. 프레이리는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구분한다. 인간의 삶의 원천을 실천에 두

8) 한승희, “시민교육심포지움, “한국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 2013

9) 황주석, “마을이보인다사람이보인다” 한국YMCA전국연맹, 2015

10) 미국의 민중교육자 마일스 호튼은 주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중들이 우리에게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민중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중의 언어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비전이다. 상황이 스스로 발전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스스로 성장하도록 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실제 하는 일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다. (파울로프레이리, 마일스호튼, 우리가걸어가면길이됩니다. 아침이슬 2006)

11) 존 엘리아스, “해방의 교육자 프레이리와 교육” 살림터, 2004. 26쪽

고 있는 변증법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페다고지의 핵심적 주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주체로 바로서야 하며, 대상화된 객체로서 사물로 머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은 피억압자들에 의해 그리고 피억압자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피억압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억압적 상황을 깨닫게 하고, 실천을 통하여 이러한 억압적 상황을 변혁할 수 있다고 말한다.¹²⁾

또다른 측면에서 ‘의식화와 조직화’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의미에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민중교육에 있어서 의식화 및 조직화의 주체 혹은 대상은 모두 개인들이었다. 누가 누구를 의식화시킨다는 식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조직, 단체 혹은 공동체를 그 단위로 한다.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단체, 공동체, 네트워크 등이 스스로 의식화 및 조직화의 단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운동의 거울이다.¹³⁾

초기 마을만들기 운동의 중요사례인 광주 좋은동네만들기 시민대학 운동과 순천 주민자치대학은 사회운동에 있어서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 두 사례의 공통의 키워드는 마을, 사람, 학습, 관계이다. 마을이 세상이고, 사람이 희망이고, 학습이 방법이고, 관계가 관건이라는 모토가 두 사례에서 녹여져 있다.¹⁴⁾ 학습을 하는 목표 역시 어떤 사회문제를 즉각 해결하는데 있지 않고, ‘변화의 추진자’¹⁵⁾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에서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황주석에 따르면 “사회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 변화의 조건은 제도와 인간의 변화이며, 이들의 관계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와 같다. 제도와 인간이란 두 요인 중에 변화를 규정하는 쪽은 바로 후자인데, 이는 이 양자가 불균형 상태일때 일어나는 결과를 살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형식이 내용보다 거창하면, 형식은 부패하거나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형식이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할 때에는 개혁이나 혁명이 일어난다. 이들의 크기가 같을 때는 정체(停滯)가 자리를 잡는다.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지향은 바로 인간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일상 속에서 시민으로서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면 이런 인간의 변화와 성장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광의적 목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2) 존 엘리아스, “해방의 교육자 프레이리와 교육” 살림터, 2004.27쪽

13) 한승희, “민주시민교육길라잡이 서문, 민주시민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2002

14) 최봉익 광주YMCA좋은동네시민대학위원장이 발표한 지역리더 발굴과 주민교육 - 주민자치센터와 함께하는 광주YMCA주관 시민대학 중심 - 을 인용함. (월간 자치행정 <자치원점을 찾아> 2007년 4월호)

15) 김기현은 커뮤니티(communitiy)와 빌더(builder)의 의미를 담아 변화의 추진자를 커뮤빌더라고도 명명했다. “커뮤빌더는 전환기의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지만 지난 수년간 자신의 삶터에서 대안적인 가치를 실천하며 각박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갔다.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자고 격려하는 평범하지만 우리에게 용기가 된 사람들이다.” (김기현, 우리시대커뮤빌더 이매진, 2007, 12p)

<표2. 민주시민교육운동 키워드 정리>

<민주시민교육운동 개념 요약정리>

- 가. 사람을 위한 운동이다. (개인의 삶의 질, 관계의 변화)
- 나. 사람 만드는 운동이다. (조직운동, 역량강화)
- 다. 운동의 내용을 만들고 실천하는 터전은 '지역'이다. (일상적, 지속적)
- 라. 운동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이다. (운동의 기획-실천-평가 과정)
- 마. 운동 과정, 방법, 도구의 핵심 요소는 '학습(學習)'이다. (성찰과 변화)
- 바. 운동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람과 지역사회의 변화이다. (질적 평가)

3. 한국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흐름

시민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가다보면 일제시대에 창립된 YMCA(1903년)와 흥사단(1913년)이란 사회운동 단체들이 시민교육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체들은 창립 시기부터 농촌계몽을 위한 농민교육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토론학습 등을 전개했고,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뒤 정부는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교육하기보다는 준법정신이 강하고 애국하는 충성스런 국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의미로 강조됐다.(김미란, 1998)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오랜 기간 이른바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이 전 사회적으로 실시됐다. 이 또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심지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교육활동은 위협시되고 억압을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맥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김신일(1994)은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의 전개과정에서 해방 직후와 1960년대에 잠시 동안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시도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부주도의 국가주의적 또는 정권안보 지향적 정치교육으로 일관됐다고 정리한다. 또 소수 이기는 했지만 민간 시민단체들과 정권비판운동 단체들 그리고 학생운동이 좁은 정치적 공간 속에서도 시민정신을 끊임없이 일깨운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급속한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됐고, 이 문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을 필두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이념.의제.활동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¹⁶⁾ 즉 시민단체의 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경제.지방자치.문화.여성.인권.반부패.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주시민교육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시민교육의 각 영역을 포괄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의 흐름이다. 97년 10월 30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2000년 1월 3일 시민교육진흥법안이 의원 발의되었으나 의원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체는 학자그룹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시민단체연대기구인 민주시민교육포럼,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민주개혁국민연합이 중심이 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등이다. 또한 1998년 전국 시민단체들 간의 협의체인 ‘시민단체협의회’는, 산하에 시민정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지도력 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담론형성을 위한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송창석, 2004) 또 한편에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거 관변 단체로 불리던 자유총연맹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1998년)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보수든 진보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2010년 6월에는 보수와 진보, 공공기관 및 학계의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단체들이 결합하여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를 결성¹⁷⁾하였다.(『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심정보, p. 170)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제도권으로 확산 되었다. 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는가 하면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2000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센터, 2001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이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2011년부터는 경희대의 경우 후마니타스칼리지(시민교육) 과정을 교양필수로 만들면서, 대학 안에서 시민교육이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도 2010년부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따라 경기도, 충북, 전북, 전남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3년부터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북,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수원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16) 한국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독특한 조건으로 군사독재, 고속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주체와 내용이 민중교육,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기본적인 관점 역시 파울로 프레이리의 ‘피억압자의 교육’으로 불리던 민중교육의 관점에서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과 방법, 평생학습과 학습공동체의 관점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17)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주요참여단체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선거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한국YMCA, 흥사단, 경실련,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선거시민모임, 볼런티어21, 열린사회시민연합 이다.

고민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현황 (2019년 9월 현재)

1. 민주시민교육 기본법 제정을 위한 흐름

시민사회 법제화 요구에 따라 기본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

15대 국회_1997_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_박명환 의원 등

16대 국회_2000_시민교육진흥법안_김찬진 의원 등

17대 국회_2007_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_이은영 의원 등

19대 국회_2015_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_이언주 의원 등

_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_남인순 의원 등

20대 국회_2016_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_남인순 의원 등

국회_2019_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_소병훈 의원 등

2. 지자체별 민주시민교육조례로 제도화 시작!

-2014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별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화 본격화 됨

-2016년 촛불혁명은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돌아봄과 시민이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책적으로 주민자치와 협치, 분권 등 일상의 현장에서 시민의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속 에서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017년 이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통해 이러한 경험의 장을 지원하는 체계인 조례 제정이 본격화 되었음.

<광역자치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4)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5)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6)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7)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조례(2018)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경기도 기초자치구>

경기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5)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7)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8)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7)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8)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8)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8)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조례(2019)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연천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기초자치구>

서울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인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울산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충남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경남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8)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시민교육포럼에서 논의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에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적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절차적으로 학습하는 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013 시민교육 심포지엄』자료집 p. 25) 또한 서울대학교 한송희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교육의 과정”, “국가의 일방적 정치사회화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비판적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다.(한송희 2002) 이외에도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교양교육으로서

의 시민교육 등 더욱 다양하게 정의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유형화 시켜 보면

	일반단체	정부
제 3세대 (2000년대-)	자유시장(자본주의)논리를 넘어 '협동', '대안'에 대한 담론 운동의 방식과 방향 성찰 ¹⁸⁾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결속, 사회적 통합 강조
	풀뿌리자치운동 ¹⁹⁾ 에 대한 새로운 모색 -돌봄과교육공동체,지역화폐운동(LETS), 생협,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주민조직 - 마을만들기 운동 전국화	-평생교육법제정(1999년)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교육인적자원부)
제 2세대 (80-90년대)	공간으로서의 지역운동을 위한 활동가중심의 지역주민조직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의 사회교육
	-전문화, 다양화, 세분화 -생산공동체운동, 환경운동, 풀뿌리선거운동, 여성운동, 공부방 등 ²⁰⁾	-직업교육과 평생고용가능성 증진 강조(기술변화에 따른 특정 기술 교육)
제 1세대 (60-70년대)	사회운동의 매개로서의 지역주민의식화교육	자아실현, 사회적응 강조
	-빈민, 농촌,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의 매개로서 지역주민교육 ²¹⁾ 이 존재	-인문교양 중심의 교육

18) 이른바 90년대식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90년대식 시민운동	풀뿌리운동
운동의 가치 지향	근대적(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탈근대적(생태, 인권, 평화)
운동 대상	사회구조(법과 제도, 정책)	사람과 생활(의.식.주)
운동 방법	하향식(세상을 진단하고 논평하는 방식)	상향식(주민이 주체가 돼서 밑에서부터 의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방식)
운동의 주제	시민단체	주민
운동의 평가	성과 중심(언론의 보도, 법제도의 변화 등)	과정 중심(사람들과의 관계, 자기만족 등)
합의양식	선거와 관리주의	뽑기(?)와 자율주의
운동의 속도	빠름(1년 단위 총회, 프로젝트 등)	느림(중장기적 프로젝트, 계획 등)

19)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집단적 활동을 통해 자신과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의식적인 활동”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하승수)

20)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한 빈민운동, 노동운동, 도시철거민들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운동(현 자활

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

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아데나워재단으로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소개되면서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독일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이해부터 선거, 투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민주적 토론 문화 실현, 사회적 갈등 해결, 주민자치와 시민참여 등에 대한 논의와 실재를 담고 있다. 이런 시민교육을 토대로, 90년 중반 시작된 마을만들기 운동이 2000년 넘어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나. 학습공동체 사회,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근대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가 교육을 집중하면서 지역사회는 더 이상 학습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변의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가장 주목할 것이 모두가 학습자이며 누구도 학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학습권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학습 공간으로 보고 있어서, 학령기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평생학습이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모든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교육은 평생교육이며, 보편적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보면서, 법제화 이후 평생교육으로 시민교육이 확장되고 있다.

다. 제도권 교육의 변화,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실험과 몇몇 인문학습공동체의 움직임은 제도권 교육에서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2012년 교육청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계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마을에서 시민교육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후견기관으로 발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 풀뿌리선거운동(광역시, 시의원 출마, 지역별주민연대조직), 여성학교(지역여성 의식화교육), 아동복지서비스와 주민조직이 연계된 지역 공부방 운동 등

- 21) 도시선교위원회에 의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술 알린스키(S.Alinsky)의 지역사회조직이론,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민중교육론에 입각한 지역사회운동 훈련이 시작되었으며, 훈련받은 활동가를 2인1조로 도시빈민지역에 파견하여 철거와 같은 사회문제를 여론화 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70년대 초반부터는 질병문제, 교육문제와 같은 지역의 일상적 사안 중심으로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조직화를 위한 의식화 교육이 이루어짐. 이 때 만들어진 민중교회, 탁아소, 공부방, 야학 등은 주민을 지역주민과 만나고 주민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됨.(“한국의 지역사회운동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해”, 이경림, 부스려기사랑나눔회 사무국장)

이처럼 시민교육은 교육 주체나 학습자, 관점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내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것도 시민교육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방식과 정의를 통해 시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단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육 이후의 실천과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와는 달리 교육과정 안에서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주입식 교수법이 아니라 참여와 토론, 활동 등 다양한 쌍방향 교수법과 함께 교육 이후에 배운 것을 나누는 봉사의 과정, 실천하는 참여의 과정, 자신의 판단을 이행하는 운동의 과정 등을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과정과 함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콘텐츠와 학습자 모집에 대한 경쟁체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시민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4. 일상의 민주주의 토대 구축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운동의 지역화 전략

최근 시민교육이 전국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416이후,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 욕구와 이해가 다변화 되면서 지역에 기반 한 시민정치, 시민자치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3년이 지난 2017년 촛불혁명은 한국사회에 큰 물음을 던진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는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사회에 세월호 이후라는 큰 과제를 던져 주었다. 당시 “가만있어라.”는 말은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고, 가만있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17백만 촛불이 평화적 시위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만들면서,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물음을 전 사회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교육자치 영역에서 점화되었고, 혁신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화 전략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가 및 사회운영 시스템을 자치와 분권에 기반 한 체계를 구상하고 실현시키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둘째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틀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주력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 위험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벡 교수는 근대화 이후 발생한 대형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21세기가 안겨준 위험을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문제들은 지구적(global)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적(local)"이며 "지구적, 국가적, 도시적, 지역적인 문제가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존 공동체적 가치와 작동원리가 무너지고 있고,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하고 구성해야 하며 그런 만큼 더 위험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성찰적 현대화가 야기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산업 사회의 문제를 관리하는 낡은 정치 모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 정치의 개혁 또한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이전에 정치의 장 외부에 있던 하위 정치 영역을 성찰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 운동 방향과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공동 목표는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 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부 시민교육운동 진영이 독일식, 미국식, 스웨덴식 시민교육을 연구하며, 크고 작은 실천 활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15년간 3-4차례,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재까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진 못했지만, 한국사회 내 새로운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험을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토대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전략이 시민사회 전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는 시민운동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지역에 기반 한 시민사회라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민주주의 위기는 늘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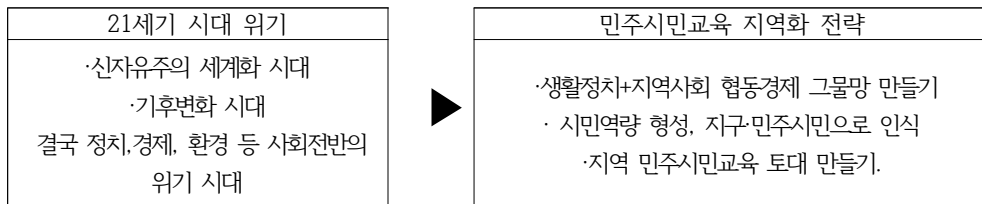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최근 민주시민교육은 촛불혁명 이후, 자치분권 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는 그릇으로서, 시민참여 전략으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리되는 핵심 키워드는 지역, 자치, 협치, 공공성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고, 이에 기반한 연결망, 관계망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시민교육이 현재 고민되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형이 아닌, 토대 구축형으로서 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이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여전히 갈 길이 멀게 보인다.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몸으로 겪으며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머릿속 아테네를 떠난다. 경험적이지 않기에 그 지식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지식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슨 무슨 민주주의를 떠들기는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실제 공간에서, 일상 생활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매우 드물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제도의 수준에서만 논의될 뿐 실제 삶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생활방식이자 삶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민주적으로 살지는 못한다. 민중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있을 때에만 빛을 발한다. 따라서 민주시민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²²⁾

22) 하승우, “청소년 문학” 2010년 여름호, 2010

민주시민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을 키워낼 수 있는 사회제도의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1950년대 스웨덴에서 보수든 진보든 사회발전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 운영하는 것도 좋은 사례이다. 그리스 아테네에 아고라는 각기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상가들이 이리저리 거닐며 서로의 이야기를 표현했던 직접민주주의 표현장이었다. 아고라는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자기 삶과 아테네 공동체의 건설을 토론하며 해답을 찾아가게 만들어 준 학습공간이기도 하였다. 현대에 와서 이와 같은 고대의 아고라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학습공동체운동을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운동과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결국, 촛불혁명이후, 자치분권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여러 변곡점이 있었지만,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2016년 촛불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불확실성 시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하는 데 민주시민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서구에서 먼저 시행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점을 우리 사회에 맞게끔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영역에 대한 쟁점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대체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과도 따로 구별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학교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견지 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서구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자생적.순차적.전 방위적으로 발전한 시민교육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학교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규정되고 구분된다.

이러한 구별의 근거에는 그동안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했을 뿐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다. 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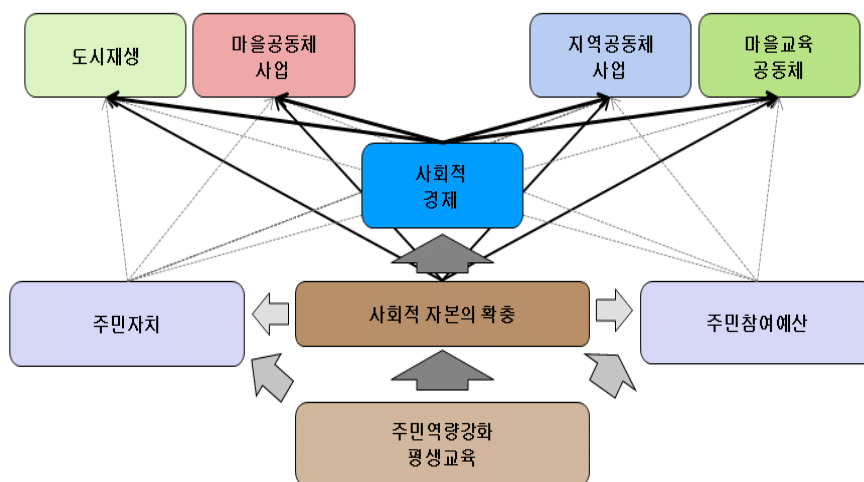
주의는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이 있을 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에 시민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도록 합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2016년 촛불 이후의 새 정부 들어 국정과제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앙 중심 ⇒ 지역 중심>으로, <정부 중심 ⇒ 민간 중심>으로, <행정 중심 ⇒ 거버넌스 중심>, <보조금 지원중심 ⇒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제시되면서 이 흐름에 맞는 틀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기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치분권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자치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교육자치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영역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아래 표2를 보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평생교육과 연계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민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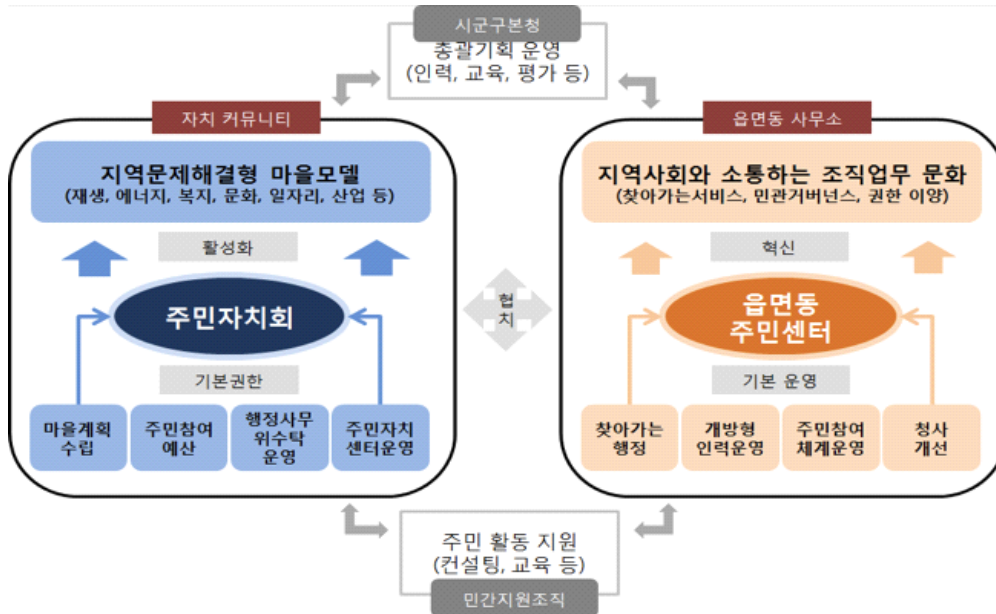
표2>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연계



마을 운동 쪽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혁신읍면동 사업 역시, 동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회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마을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마을중심정책으로 정리되는 정책방향은 동을 중심으로 복지와 자치 시스템을 주민들과 함께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방향을 담고 있다. 현재 마을 운동진영은 마을비전, 마을계획, 마을재생의 단계를

세우고 이를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표3> 혁신 읍면동 모형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2) 주민자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역량은 권한을 가지고 실제 그 일을 직접 해볼 때 축적된다.

위에 소개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도시라는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할 주민 주체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추진과정에서 주민에게 주도권과 권한을 줄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는 말이 있다.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주민참여 제도의 가짓수는 늘어났는데,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많다. 주민 발의가 활발해 졌는데, 발의를 해도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 조항이 없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행의 문제가 많다. 이런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의 국가 정책에 맞춰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주는 정책을 제도화 해야 한다. 예산이나 조례는 하나의 수단이다. 시민사회가 하던, 행정이 하던 예산을 쉽게 해석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소수의 사람만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정도여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줘야 한다.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명석을 깔아 놓고, 명석에 올라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 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야 한다. 잘 안 보이는 것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가 이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시민들이 갖는 것이다. 미국의 로체스터시의 ‘마을을 만드는 이웃들’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과정보다 공무원이 마을회의에서 하는 일은 장소를 잡고, 불을 켜고 끄는 역할이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주민들이 논의하다 막힐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행정이 지원을 하기도 한다. 지방예산에 관심이 없다가도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돈을 써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면 힘들 수 밖에 없다. 지역과 구조를 알아야, 하고 싶은 것도 생긴다. 이해관계를 알아가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살아가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해 관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드러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구상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를 자각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이다.

3) 교육 자치,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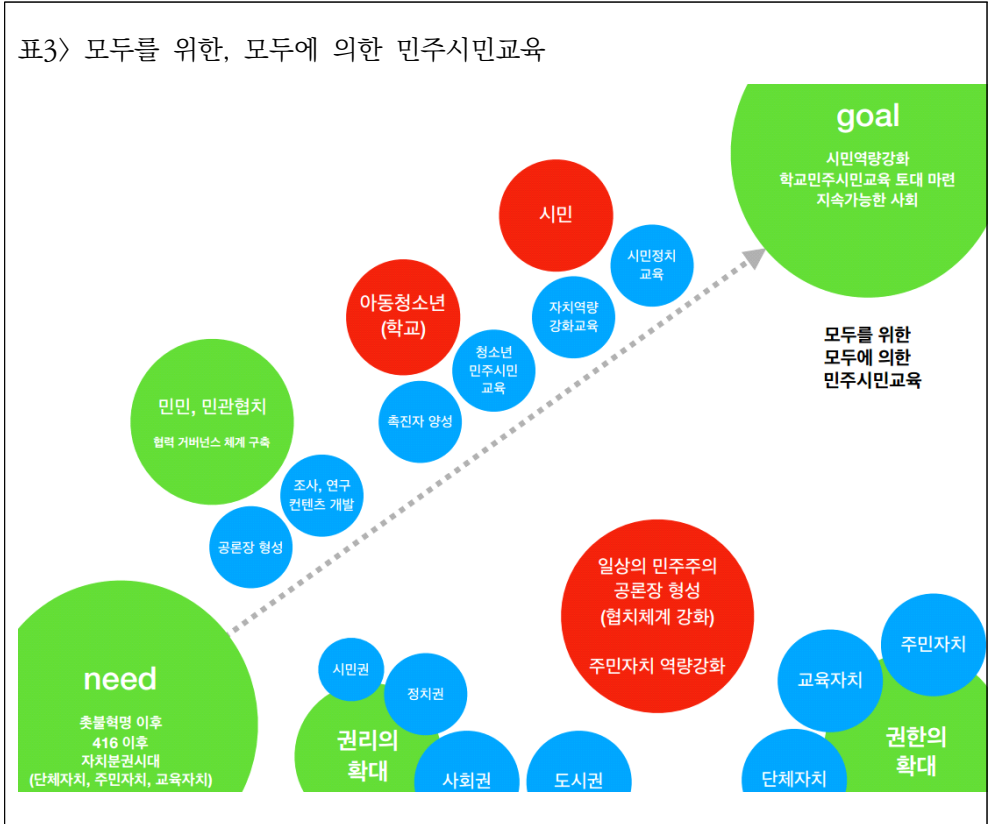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은 ‘종합예술’과 같다. 그리고 어느 한 단체나 운동영역이나 의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여러 영역에 산재된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시켜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행정, 시민단체 혹은 학계의 관점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의 종합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역별 교육 간 연결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간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정리하고, 교육방법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학생 자치, 학생 인권에 기반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운동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상을 갖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여수시에서는 교육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협치를 통한 지역교육문제를 모두의 과제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천인문의 관점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전통적 방식의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지만,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시민교육의 명확한 쏠림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데미교육, 학습공동체 방식의 시민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인 지원과 주체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행되어야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이런 활동으로만 한정지어선 안된다. 오히려 아카데미 방식은 명확한 대상을 정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공무원, 지역오피니언리더(주민자치위원, 통장, 입주자회 등)

을 대상으로 시민의 권리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시민은 교육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닌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생산하는 생산자(생활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이 자치와 분권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다음의 그림처럼 하나의 방향으로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해 보인다.



4) 민민,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와 ‘시민’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단어가 융합된 용어이다. 민주공공사회라는 지향, 시민은 이런 사회를 운영할 시민의 역량을, 교육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후변화, 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시대에 공공성은 무엇이며, 이런 판단을 내릴 시민은 어떤 교육으로 양성될까?”는 모두의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모두의 과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두를 위한, 모두의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때 실재화 될 수 있다.

이런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큰 숙제이다. 거버넌스 체계 안에 행정과 시민사

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묘한 긴장 관계와도 같다. 민관 거너번스 체계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민에 기반 한 중간지원조직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을 리드하면서 주민 주도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지만 행정이 주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수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중복된 행정처리 체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결과여서, 이를 넘어서야 변화의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 간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단기간의 성과중심으로 평가 할 수가 없다. 잘 되는듯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긴 호흡으로 축적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계속 물을 붓는 것이 중요하고, 왜 물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해 민관이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납득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두 축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흐름을 읽고 지역현실에 맞는 민주 시민교육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융합적 관점도 필요하다.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과제가 다른 영역이 아닌, 연결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듯, 현재는 선과 선을 연결해 그물망을 만드는 추세이다. 주민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결정 권한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하는데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지역 내 다양한 거점이 형성되고 거점간의 연결을 통해 운동 모델이 만들어진다. 한국 민중교육의 산증인인 허병섭 목사의 “그들을 위해 외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외침을 다시 곱씹어 볼 때이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할 때 주체가 형성되고 결국, 그 주체가 있을 때 실질적 변화는 일어난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어떻게 양성되는가? 정답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논의가 확산되고 축적되길 기대한다.

제 4강

최위환 (민주주의기술학교/녹색연합 활동가)

다시, 민주시민교육